

검 토 보 고 서

(복 지 문 화 과 소 관)

1.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
2. 계룡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3.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
4.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5.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
6.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
7. 계룡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8. 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·운영에관한조례안
9.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
10.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·운영에관한조례안

전문위원 김 세 현

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시 관내의 향토 문화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무분별한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그 지정·해제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, 조례운영상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·운영에관한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체육진흥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- 체육기반이 열악한 우리 시의 형편으로 볼 때 체육진흥을 위한 노력은 한층 소망스럽다 하겠으며, 조례안의 내용과 운영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계룡시 청소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조례안의 내용과 운영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·운영에관한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할 지도위원의 자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운영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납골당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운영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운영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의료급여법 제3조와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운영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의료급여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, 조례운영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